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51855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3. C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변론 종결 2019. 3. 28.
판결 선고 2019. 4. 2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75,493,180원 및 그중 227,102,520원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44,417,560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각 2018. 5. 23.까지는 연 10%,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 C이, 원고와 피고 B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 A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주 위 적 청 구 취 지

1.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3, 14호증, 을나 제1, 7,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체결한 아래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최초보증일 (연장약정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보증서 번호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	종류
1	2015.8.7. (2017.6.19.)	243,000,000	2018.6.22.	E	2015.8.7.	중소기업 은행	270,000,000	무역금융
2	2016.6.23. (2017.6.22.)	225,000,000	2018.6.22.	F	2016.6.28.	(주)G	250,000,000	무역금융

2) 위 각 수출신용보증약정 당시 D, 피고 A은, ① D이 대출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채권보전비용 등 부대채무를 상환하되, ②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D이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하거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3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10%로 약정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D이 2017. 9. 19.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각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1. 16. 주식회사 G에게 제2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27,102,520원을, 같은 달 17. 중소기업은행에게 제1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44,417,560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3,973,1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1)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14. 1. 15.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아파트에는 2014. 1. 15.자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17. 6. 16.자로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9,000만 원,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2) 피고 A은 2017. 7. 1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고, 계약일인 2017. 7. 15. 계약금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7. 7.21. 나머지 계약금 6,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3,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되, 위 1억9,0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2017. 6. 16.에 설정된 위 3개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해 8. 4. 잔금 5억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7. 8. 4.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피고 B는 피고 A에게 지급할 위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으로 2017. 7. 24. 위 2017. 6. 16.자 근저당권 3개를 말소하였고, 잔금 5억 9,000만 원 중 아래 임대보증금 명목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9,000만 원으로 2017. 8. 4. 위 2014. 1. 14.자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근저당채무액 합계 3억 8,000만 원).

라.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17. 8. 초경 피고 A의 처 소외 K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4.부터 2018. 4.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는 2017. 8. 17. 피고 A 및 K의 요청에 따라, 그 아들인 피고 C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임차인 피고 C,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17.부터 2018. 4.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 C이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4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4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 A의 무자력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2018. 10. 24.자 답변서의 진술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위 각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서 원고에게 구상금 475,493,180원(= 제1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244,417,560원 + 제2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27,102,520원 + 채권보전비용 3,973,100원) 및 그중 227,102,52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7.(제2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244,417,56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18.(제1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최종 송달일인2018. 5. 2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시가에서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부동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피고 B, C이 공동하여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8. 7. 및 2016. 6. 23. 이미 위 각 수출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17. 7. 15.)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에 D이 당좌거래정지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미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D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 A로서는 위 구상금채무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A이 무자력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가 각각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K가 남편인 피고 A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차인 지위를 피고 C에게 이전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2. 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호증, 을나 제1, 3, 4, 5, 6, 7, 9, 17, 18, 19, 20, 21, 22, 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⑦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 있는 서울 성동구 L아파트 M호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2016. 4. 20.부터 2018. 4. 19.로 정하여 거주하다가 가격상승세에 있는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후 거주하기로 한 후 N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매 중개를 의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④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다른 피고들과 알지 못하였다.

④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 일부를 그 소유의 수원 아파트매도대금, 모친 O과 부친 P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련하였다.

② 피고 B가 달리 피고 A의 재산 상태나 채무 현황을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 B가 악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가 선의라면 예비적으로, 악의의 전득자인 피고 C은 피고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별지2 목록 기재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 C의 사해의사의 존재는 앞서 본바와 같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전득자의 이익 중 가장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475,493,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8억 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며, ③ 이 사건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이 약 4억 2,0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시가 8억 원 - 이 사건아파트의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합계 약 3억 8,000만 원)이며, ④ 전득자인 피고 C의 이익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액인 4억 원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그중 가장 작은 금액인 4억 원이 된다.

3) 그리고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 즉 사해행위의 상대방을 말하고, 전득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수익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하여야 할 대상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 C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B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은 위 전득행위의 결과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전득자인 피고 C이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A 사이의 손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악의의 전득자인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희, 판사 김지나, 판사 정기중